

2026년 2/4분기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 융자지원 안내

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관내 유망 **소기업 및 소상공인**을 돕기 위한 서울 중구 2026년 2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(대출)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■ **신청기간** 2026.4.13.(월) ~ 4.22.(수) **9:00 ~ 18:00**

- **신청대상** 중구에 사업장 소재 및 사업자등록(6개월 경과)을 완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
- ※ 융자지원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**담보제공(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)이 가능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미사용증인** 자에 한하며, (신용보증서의 경우) 1년 이내 보증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/세금체납, 연체이력 등 보유/저신용점수(평가등급)의 경우 대출실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 - ※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■ 신청장소

- 구청 본관4층 도심산업과 방문 신청 (단, 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절차 상이함)

담보제공 방법	신청 절차
부동산	신청기간 내 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에 서류 신청
신용보증서	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종합지원센터에 발급한 "보증한도 발급확인서" 지참 후 신청기간 내 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에 서류 신청("보증한도 발급확인서" 미지참 시 구청 접수 불가) - 상담기간 : 2026. 3. 26(목) ~ 4.22.(수) - 전화번호 : 02-2174-5816 / 방문주소 :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, 3층 - 예약 시 중구청의 "중소기업육성기금" 융자 신청임을 고지 ※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종합지원센터 상담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■ 융자조건

- 융자규모 :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
- 기금용도 :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자금
- 융자한도 : 전년도 매출액의 1/2 범위 내(업체당 최고 5천만원, 단 제조업체는 1억원)
- 대출금리 : 중소기업육성기금 연1.5% 고정
- 상환기간 : 5년 (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)
- 대출제한 : 금융보험업 · 부동산업 · 보건업 · 귀금속 · 주점 · 골프장 · 무도장 · 사치투기성업 등 불입 지원제외업종[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(융자대상) ②제외대상에 따름]

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(대출)절차



■ 구비서류

필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서약서 각 1부 (중구청 홈페이지 → 고시/공고 → 부서선택 : 도심산업과 → 검색창에 "중소기업 육성기금" 입력)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2022년~2025년) 1부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(법인일 경우)법인등기부등본 1부 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(본인소유 사업장일 경우)등기부등본 1부 - 서울신용보증재단의 "보증한도 발급확인서" 1부(보증서 담보 선택 업체에 한함) -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(부동산 담보 선택 업체에 한함)
추가서류 (해당업체에 한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등록초본(대표자 또는 직원) → 중구민인 경우에 한함(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첨부) - 세목별 과세증명서(신청일로부터 1년) → 구세(재산세,등록면허세) 납부기업에 한함 -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직원 채용증빙서류) → 3년 이내 직원 채용실적이 있는 업체 - 산업재산권 또는 기술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→ 보유자에 한함 - 장애인기업 확인서, 여성기업확인서 → 보유자에 한함 - 재직증명서 및 대표·직원신분증(직원접수시),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제3자 접수시,가족포함)

■ **문의처**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 (☎ 3396-5593)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증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증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창업진흥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